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90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민병덕·김병기·이수진

김재원 · 한창민 · 남인순

염태영・박 정・김승원

김성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 게 통보하고 있는데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 함.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함. 이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 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7 조).

법률 제 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6항"으로 한 다.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조제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특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65호 부칙 제11조에 따른 대체조제에 관한 경과조치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27조(대체조제) ① ~ ③ (생 제27조(대체조제)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약사는 제2항에 따라 처방 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 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 ----의사, 치과의사 또는 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 제 한-----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거 나 처방전에 기재한 전화 • 팩 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⑤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4 항에 따라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을 발행 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알 려야 한다.

_
<u>⑦</u> <u>제4항 및 제6</u> 호